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

◇ 제 · 개 정 이 유

- 집중호우 증가로 인한 침수피해 저감 및 하수도시설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하수도설계기준 개선

◇ 주요내용

가. 우수배제계획 신설(KDS 61 1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)

- 계획구역 내 발생한 오수는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송·처리될 수 있도록 수집하여야 함
- ※ 단, 합류식 하수도의 경우 우천 시 계획오수량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우수토실로 방류

나. 관련계획 추가(KDS 61 1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)

- 하수도계획 시 조사지역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, 국가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,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추가

다.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개선계획 수립(KDS 61 1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)

- 우수배제 개선 대책에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이 있으며, 효율적인 침수대응을 위하여 비구조적 대책을 우선 고려

라. 맨홀 부속물의 내구성 확보(KDS 61 40 00 관로시설 설계기준)

- 상습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등에 설치되는 맨홀에 대하여 추락방지시설, 맨홀뚜껑 및 받침 등 부속물의 강도 확보

마. 하수저류시설 용도별 세부 설계기준 명확화(KDS 61 40 00 관로시설 설계기준)

- 하수저류시설을 용도별로 침수방지기능, 오염저감기능 저류시설로 구분하고 용량산정, 위치, 형식, 구조기준 등 세부기준 제시